6.25전쟁 납북자 신고에 가족여러분이 적극 나서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2010년에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1년부터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해드리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납북자 결정을 하면서 지난 63년동안 납북자 가족 한 분 한 분이 직접 겪으신 가슴 아픈 사연 들을 접하다보면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납북자 가족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신고에 적극 나서 주신다면 우리사회가 납북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6.25전쟁 납북자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며, 납북자 가족 여러분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정부가 납북피해에 대해 개별적인 지원이나 보상은 해드리지는 않으나 공식적인 납북인정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나아가 남북관계 진전시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송환 및 상봉 기회를 부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납북자 가족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625전쟁 납북자 가족분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의 신고를 받아 지난 60년동안 응어리진 납북자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25전쟁 납북자 가족 여러분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으로 전화(☎ 1661-6250)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전쟁 납북자 신고 쉽고 간단합니다.

◆ 신고대상: 6.25전쟁 전시납북자

6·25전쟁 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정전협정 체결 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

◆ 신고자격: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친족관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

하는 사람

❖ 마감기간 : 2013.12.31.일 까지

◆ 신고방법: 신고인의 거주지 시·군·자치구청에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주소지 시·군·구청에 비치

구비서류

- ① 납북피해 신고서(신고인이 신고처 방문 직접 작성) 신고인, 납북자 성명, 생년월일, 납북당시 나이·거주지· 직업, 성별,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② 가족관계증명서(신고인과 납북자의 관계 신고인이 직접 발급) 신고인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직접 발급
- ③ 제적등본(신고인이 납북자의 제적등본을 직접발급) 신고인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직접 발급
- ◆ 납북경위서(신고인이 신고처를 방문하여 직접작성)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 사항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⑤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인 직접 확보) 납치자 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 보도자료, 재직 증명서 등을 신고인이 확보하여 제출

1950~1956년 사이에 발행된 6·25전쟁 납북자 주요명부에 등재되신 분이나 이산가족 명부에 등재되신 분 중 6·25전쟁 납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재신고 하셔야 합니다.

6.25전쟁 납북자 신고 시 궁궁한 점은 물어보세요.

신고처 및 신고방법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청을 직접방문하여 신고 (가까운 신고처 문의 ☎1661-6250)

신고인이 문맹·질병 등의 사유로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 하기가 곤란한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 대리인이 신고 가능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유 서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족보 등)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현재 정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4종으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 검색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검

홈페이지에서 납북자 명단확인 가능

- ▶ 1950년과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①서울시 피해자 명부 ②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 ▶ 1954년 내무부 치안국이 작성한 ③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 ▶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작성한 **④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 ※ 그 밖에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납치자 명부 사본이나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 자료 등 납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납북될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납북자와 납북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을 구체 적으로 알고 있는 2인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첨부 (단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문의전화

1661-6250

www.abductions625.go.kr

6·25전쟁 납북자 신고 쉽고 간단합니다.

625전쟁 납북자 신고

납북자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